

의안번호	2213486
의 퇴 인	한지아 의원
회 답 일	2026.1.15.
추계번호	25C5484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체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체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7,200만원(연평균 1,44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50	—	—	—	—	50	10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 (안 제9조)	4.4	4.4	4.4	4.4	4.4	22	4.4
합 계	54.4	4.4	4.4	4.4	4.4	72	14.4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 인체정보 보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인체정보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 -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체정보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체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제1항) - 실태조사의 대상·주기·절차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제1항)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10조에 따른 인체정보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11조 (안전조치의무)	-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이하 “처리자”)은 인체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제1항) - 처리자는 인체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재식별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익명화하여야 한다. 파기·익명화의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기준·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용역 및 인건비, 출장비, 운영비 등의 사업비를 포함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8조 (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인체정보의 관리·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대상·주기·절차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예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대상에 따라 다양한 유형·규모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26년 기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41억 9,300만원)¹⁾, 생활 밀집 분야 개인정보 처리실태 모니터링(2억 9,300만원),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조사(3억 5,800만원)
3	안 제9조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	○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4	안 제11조 (안전조치의무)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체정보 파기, 익명화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는 비용 소요 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향후 정해질 인체정보 지정 현황에 따라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또는 자문이 필요할 수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안 제9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
- 제정안에 따른 ‘인체정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정보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를 말함

*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 인체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²⁾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현재 관리·규제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인체정보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과 위원회의 수행 및 설립 여부,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계 첫 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사사례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3차 기본계획에 5,000만원(2016년), 제4차 기본계획에 4,000만원(2019년) 배정³⁾
 - － 본 추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첫 연구용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준용함
- 추계 결과, 추계 첫해인 2027년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1, 2차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자체경비로 수행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없음

[표 2]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50	-	-	-	-	50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안 제9조)

- 제정안에 따라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하며, 그 외의 운영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위원회 조직,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정원과 회의 횟수 등은 유사사례인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⁴⁾를 준용함⁵⁾
-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위원 정수) 정원 25인 중 민간위원 22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본회의 개최 횟수를 준용하여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⁶⁾을 준용하여 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4)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개인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제공·결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8. 의료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

5) 참고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의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 않음

6)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3]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 (안 제9조)	4.4	4.4	4.4	4.4	4.4	22	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